

의안번호	2201663
의 퇴 인	조인철 의원
회 답 일	2024. 7. 29.
추 계 번호	24B1975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25조제5항 (기금의 조성) 신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 제1항¹⁾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의 신고를 한 자로서 이용자 수 또는 트래픽 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전년도 해당 부가통신사업에 따른 매출액에 그 100분의 1의 범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징수율을 곱하여 산정한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음	재량규정
2	안 제26조제1항 제10호의2(기금의 용도) 신설	기금의 용도에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보편적 의무²⁾에 대한 장애인·저소득층 등의 요금감면 지원 추가	의무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25조제5항 신설 (기금의 조성)	미대상 - 기금 수입의 증가
2	안 제26조제1항 제10호의2 신설 (기금의 용도)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1)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부가통신사업의 신고 등) ①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및 절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2)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보편적 의무"란 모든 이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적절한 요금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전기통신 의무를 말한다.

2. 상세 사유

□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에게 기금 조성 의무 부과(안 제25조제 5항 신설)

- 개정안에 따라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재원이 되는 분담금에 이용자 수, 트래픽 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로부터 전년도 해당 부가통신사업에 따른 매출액의 100분의 1의 범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징수율을 곱하여 산정한 분담금을 징수할 경우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비용추계서는 재정지출의 순증가액 또는 재정수입의 순감소액에 관한 추계로, 동 규정은 비용추계의 대상이 아님
- 참고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2022년 부가통신사업 전체 이용자는 3개월 평균 258.2만명으로 조사되었고, 국내 부가통신사업자의 총매출액은 1,450.4조원, 이중 부가통신 매출액은 328.5조원, 디지털플랫폼 매출액은 114.4원으로 조사되었음

[표 1] 2022년 기업 규모별 부가통신서비스 3개월 평균 이용자 수

(단위 : 만명)

구분		전체 부가통신서비스 사업자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	
		3개월 평균 이용자수	표본 수	3개월 평균 이용자수	표본 수
전체		258.2	94	295.9	70
기업 규모	중소기업	62.3	29	80.0	21
	중견기업	249.3	23	292.1	19
	대기업	398.3	42	449.4	30

주: 부가통신사업자의 대표서비스의 '22년 10~12월의 월 평균 활성 이용자 수(한 달 동안 한 차례 이상 해당 서비스를 이용한 순수 이용자 수)로 기준 일치를 위해 전문업체를 통해 조사, PC 및 모바일 이용자 수를 포함하나 모바일의 경우 아이폰을 통한 이용자 수는 제외되어 실제 이용자 수는 더 많을 것으로 보임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표 2] 2022년 부가통신사업자의 기업 규모별 매출액(추정치) 현황

(단위 : 조원, %)

구분		국내 총매출액 ¹⁾ (비율)	부가통신 매출액 ²⁾ (비율)	디지털플랫폼 매출액 ³⁾ (비율)
전체		1,450.4(100)	328.5(100)	114.4(100)
기업 규모	중소기업	70.1(4.9)	30.7(9.3)	9.6(8.4)
	중견기업	175.7(12.1)	54.2(16.5)	17.8(15.6)
	대기업	1,204.6(83.0)	243.7(74.2)	87(76)

주: 1) 부가통신사업자의 모든 매출액으로, 제조기업·서비스기업의 제품·상품·용역, 기타(로열티 등) 매출도 포함

2) 부가통신 서비스를 통한 매출액으로, ‘총 매출’ 중 기업별 조사된 부가통신 역무를 통한 매출비중을 적용하여 산출

3) 디지털플랫폼 사업자의 이용자·광고·중개·입점 수수료 매출액 합산

4) 2023년 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2022년 12월 기준 조사 시행) 결과, 2023년 실태조사는 표본조사로 조사 대상 1,501개 사업자의 매출액을 바탕으로 모집단 5,863개 사업자의 매출액 추정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용도에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보편적역무에 대한 장애인·저소득층 등의 요금감면 지원 추가(안 제26조제1항제10호의2 신설)

- 개정안에 따라 방송통신발전기금을 통하여 보편적역무에 대한 장애인·저소득층 등의 요금감면 지원이 이루어질 경우 기금의 지출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현시점에서 지원 대상 장애인 및 저소득층의 기준이 확정되지 않아 대상을 특정할 수 없고 지원대상 보편적역무의 종류, 요금 감면 수준, 지원 방법 등 비용추계에 필요한 기초 자료가 부재한 상황이어서, 향후 5년 동안 기금지원 소요액을 추계할 수 없음
- 참고로, 현재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청각·언어장애인에게 통신중계서비스를 제공하고, 도서·산간 벽지 등 농어촌에 초고속인터넷망을 구축하여 소외계층의 통신접근권을 보장하는 사업이 있음

[표 3] 2024년 방송통신발전기금 사회적 약자 대상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	지원대상	사업내용	2024 계획액
소외계층 통신접근권 보장 (3231-305)	청각·언어 장애인	청각·언어장애인이 비장애인들과 영상(수어), 문자, 음성 등을 통해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통신중계서 비스를 제공	3,213
	농어촌주민	전국 어디에서나 비대면 온라인 서비스를 쉽게 이용 할 수 있도록 도서·산간 벽지 등 농어촌에 초고속인 터넷망을 구축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 발췌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박인재	이유미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박인재	02-6788-4650	powerreset@nabo.go.kr